지정검사기관 업무수행능력 평가표 및 세부 평가내용

분 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배점	취득점수
합 계			1,000	
A 운영체계	소 계		400	
	A.1 운영관리체계	1.1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30	
		1.2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	3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인적기준)	2.1 전문기술력 추가 확보여부	60	
		2.2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90	
		2.3 검사직원의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 활동	30	
		2.4 검사직원의 장비 활용수준 향상 활동	6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물적기준)	3.1 검사장비유지·관리 적정성	50	
		3.2 법정장비 및 추가장비 활용 실적	50	
	가감점항목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4.1 최근 2년이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	0~+10	
		4.2 최근 2년이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	0~-80	
	가감점항목 A.5 종합화	5.1 종합검사지원(컨소시엄 구성 등)	0~+10	
B 업무성과	소 계		600	
	B.1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	1.1 자율검사프로그램 사업장 검사수행계획(검사주기 등)	50	
		1.2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결과 기록서류 관리	50	
		1.3 자율검사 관련 업무처리 규정(지침 등) 준수 여부	150	
		1.4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 실시의 적정성	150	
	B.2 만족도 및 우수사례	2.1 자율검사 사업장 만족도	100	
		2.2 자율검사 우수사례(정성평가)	100	
	가감점항목 B.3 자율검사결과 신뢰도	3.1 자율검사 사업장에서 대상품에 의한 재해발생 건수 ('안전검사 대상품' 기인 재해자 1명 증가시마다 -10점)	0~-50	
		3.2 검사대상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장-기관간 교류활동	0~+50	

A 운영체계

A.1 운영관리체계

평가항목A.1.1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 적정하게 수립, 이행	□ 30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 수립하였으나 이행이 미흡	□ 20
	운영방침 또는 운영표준 수립하여 이행	□ 10
	운영방침 또는 운영표준 수립하였으나 미이행	□ 5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 미수립	□ 0
주요 착안사항		

○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평가는

- 기관의 운영방침 및 검사사업 운영표준을 수립하고
- 수립된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을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 운영방침 : 지정검사기관 운영계획, 연간 사업계획 또는 품질매뉴얼(KOSHA 18001, ISO 9001, 14001, 18001 등)에 따른 운영방침 등 지정검사기관과 관련한 운영목표를 확인

※ 운영표준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검사업무 관련 매뉴얼, 내부업무처리규칙, 지침 등 법령(고용노동부 고시 포함)을 제외한 자체적으로 작성·운영중인 업무처리 기준

○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평가 방법**은

-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이행하였을 경우 “30”
-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을 수립하였으나, 이행이 미흡한 경우 “20”
- 운영방침 또는 운영표준 중 어느 하나만을 수립하여 이행하였을 경우 “10”
- 운영방침 또는 운영표준 중 어느 하나만을 수립하였으나, 이행이 미흡한 경우 “5”
-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을 미수립 “0”

*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평가반원이 소속된 지역본부 관할구역에 속하지 않는 현장으로 선장하고, 최소 2개소를 확인한다.

평가항목A.1.2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가 명확하고, 업무체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30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가 명확하나, 실제 업무수행 내용과 다소 불일치	□ 15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가 불명확	□ 0
주요 착안사항		

○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 평가는

- 기관의 부서별 업무체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관리되며
- 개인별 담당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관리되는 등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

※ 지정검사기관의 업무와 관련, 부서 또는 개인의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문서화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검사 관련 검사원의 검사업무분장에 따른 안전검사 수행여부를 확인함

○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 평가 방법**은

-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가 명확한 경우 “30”
-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가 다소 불명확한 경우 “15”
-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가 불명확한 경우 “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

평가항목A.2.1	평가기준 (배점 : 60)	평가결과
전문기술력 추가 확보 여부	평가점수가 50점 이상	□ 60
	평가점수가 40점 이상 50점 미만	□ 50
	평가점수가 30점 이상 40점 미만	□ 40
	평가점수가 20점 이상 30점 미만	□ 30
	평가점수가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
	평가점수가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
	평가점수가 0점인 경우 “0”	□ 0
주요 착안사항		

○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평가**

-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이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 대비, 상위 자격, 학력 등 추가적인 전문기술력 확보 노력도를 평가

구분	법정 요구조건	확보기준	추가 인정가능 전문기술력
계		8명 이상	
공통 (검사책임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지도사(건설 분야는 제외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설계·제작 또는 검사 분야에서 10년 이상(석사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가. 기술사 또는 지도사 추가확보 나. 기술사 또는 박사
종합지정 검사기관 (검사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또는 취급업무에서 5년 이상(산업기사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기술사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전자·화공·산업위생·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기구의 취급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석사 이상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나목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전자·화공·산업위생·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기구의 취급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학사 이상
	라. 고등학교에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 분야를 졸업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기구의 취급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이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전문학사 이상 또는 산업기사 이상
	마.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
	바. 승강기기능사 면허를 가진 사람	1명 이상	승강기산업기사 이상

- 전문인력 추가확보여부 산정 방법
  - 기관에서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법정 최소인력에 해당하는 인원들의 추가적인 전문기술력 보유여부에 따라 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단, “공통-가.”항에 해당하는 책임자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1명 있는 상태에서 기술사 또는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전문가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평가점수 산정방법 (①항 득점과 ②항 득점을 합산한다.)

① 검사책임자 (최대 60점)

• '가' 항에 해당하는 인원(검사책임자) 및 검사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기술사 또는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한 경우 : 인당 15점

• '나' 항에 해당하는 인원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설계·제작 또는 검사 분야에서 10년 이상 또는 박사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 15점

② 검사원 (최대 70점)

• 각 항에 해당하는 인원이 '추가 인정가능 전문기술력'보유자인 경우 : 인당 10점

※ 단, 기계분야 저정검사기관은 11점, 장치 및 설비분야 지정검사기관은 15점, 국소배기장치분야 지정검사기관은 20점으로 한다.

구분	항목	확보기준	추가 인정가능 전문기술력	추가 전문기술력 보유현황	1명당 배점	득점
득점 계						점
공통 (검사책임자)	가.	1명	가. 기술사 또는 지도사 추가확보	명	15점	점
	나.		나. 기술사 또는 박사	명		
종합지정 검사기관 (검사원)	가.	1명 이상	기술사	명	10점	점
	나.	1명 이상	석사 이상	명		점
	다.	1명 이상	학사 이상	명		점
	라.	2명 이상	학사 이상 또는 산업기사 이상	명		점
	마.	1명 이상	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	명		점
	바.	1명 이상	승강기산업기사 이상	명		점

[평가 예시]

<기관현황>

A기관에서는 '검사 책임자'에 해당하는 인원을 1명 확보하고 있으며, 검사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제외하고도 지도사 1명을 추가적으로 채용하였다. 또한, '검사원' 중 '마.'항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비파괴검사 산업기사'를 채용하여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평가점수 계산>

- 검사책임자(1명) 15점 + 검사원(1명) 10점 = 25점

○ 평가결과 산정

-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60"
- 평가점수가 4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 "50"
- 평가점수가 30점 이상 40점 미만인 경우 "40"
- 평가점수가 20점 이상 30점 미만인 경우 "30"
- 평가점수가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20"
- 평가점수가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10"
- 평가점수가 0점인 경우 "0"

평가항목A.2.2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취득 점수	

평가항목A.2.2.1	평가기준 (배점 : 60)	평가결과
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전문성 향상 교육 이수	검사수행직원 교육훈련 관련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결과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 60
	검사수행직원 교육훈련 관련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결과가 80% 이하, 60% 초과하는 경우	□ 45
	검사수행직원 교육훈련 관련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결과가 60% 이하, 40% 초과하는 경우	□ 30
	교육·훈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안전검사 전문성 향상 교육 실적이 있는 경우	□ 15
	교육·훈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안전검사 전문성 향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 0
주요 착안사항		

○ **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전문성 향상 교육이수 평가**는

- 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은 기관 종사자의 안전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체(내부)교육, 외부 전문교육 등을 포함하는 교육 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

※ 전문성 향상 교육은 안전검사 관련 기준의 이해, 장비활용 관련사항 및 안전검사 수행에 필요한 전기·기계 이론, 비파괴, 용접, 재료 관련 교육 등 검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인정한다.

- 직원 교육훈련 계획은 기관내부절차에 따라 서면 또는 전산으로 작성되고 기관 운영책임자의 결재를 득하였는지 확인

○ **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전문성 향상 교육 이수율 평가**는

- (교육수료 횟수/교육계획상 교육예정 횟수)×(교육예정 안전검사 수행인력/안전검사 수행인력)×100(%)으로 평가
- 내부 자체교육, 외부교육기관 교육 등 1회 16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를 말함

※ 자체교육의 경우는 횟수에 관계없이 시간을 합산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 1회로 인정 가능

- 교육 수료증 등 객관적으로 교육을 이수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이수 여부 확인

※ 단, 자체교육의 경우는 교육결과보고 또는 교육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연간 교육계획 수립 여부 확인 및 전체 안전검사 수행직원별 전문성 향상 교육 수료 횟수(1명이 2개 과정을 수료한 경우 2회로 평가)로 평가
- 전문성 향상 교육 실적이 있더라도, 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5"로 평가
- 연간 교육계획이 서면 또는 전산으로 수립되지 않고 전문성 향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0"

평가항목A.2.2.2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외부전문교육 이수여부	평가산식에 따른 외부 전문교육 수료율이 70% 이상	□ 30
	평가산식에 따른 외부 전문교육 수료율이 40% 이상 ~ 70%미만	□ 20
	평가산식에 따른 외부 전문교육 수료율이 10% 이상 ~ 40%미만	□ 10
	평가산식에 따른 외부 전문교육 수료율이 10% 미만	□ 0
주요 착안사항		

○ 외부 전문교육 이수 여부 평가

- 외부 전문교육은 안전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외부 개설 교육 또는 강사초빙 교육 등을 이수한 수준을 평가한다.

※ 전문성 향상 교육은 안전검사 관련 기준의 이해, 장비활용 관련사항 및 안전검사 수행에 필요한 전기·기계 이론, 비파괴, 용접, 재료 관련 교육 등 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인정한다.

- 교육 수료증 등 객관적으로 교육을 이수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교육결과보고 및 교육자료 등을 통해 이수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교육별 수강시간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 A.2.2.1. 평가항목의 16시간 이상 외부 교육 과정도 동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중복평가 가능
- 교육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1회로 인정하고, 16시간 미만의 교육인 경우에는 참석시간을 합산하여 2시간 이상이면 1회로 계산한다.
- 1개 교육과정이 16시간 이상이더라도 분할하여 산정하지 않음(예를 들어, 교육시간이 32시간인 경우 16시간 단위로 나누어 2회로 인정하여서는 안 됨)
- 교육 수료 횟수는 직원 1명당 수료 횟수를 중복 산정하여 평가(예 : 1명이 2개 과정을 수료한 경우 2회로 평가)

○ 외부 전문교육 이수 여부 평가 방법

- 외부 전문교육 수료 횟수 / 안전검사 수행인력(명) × 100(%) 으로 평가
- 평가산식에 따른 외부 전문교육 수료율이 70% 이상인 경우 "30"
- 평가산식에 따른 외부 전문교육 수료율이 40% 이상 ~ 70%미만인 경우 "20"
- 평가산식에 따른 외부 전문교육 수료율이 10% 이상 ~ 40%미만인 경우 "10"
- 평가산식에 따른 외부 전문교육 수료율이 10% 미만인 경우 "0"

평가항목A.2.3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검사직원의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 활동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 활동 및 평가가 이루어짐	□ 30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계획에 따른 시행 및 평가가 일부 누락됨	□ 20
	자체적 활동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자체적 활동 및 평가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짐	□ 10
	자체적 활동과 직원 수준에 대한 평가가 없음	□ 0
주요 착안사항		

○ 검사직원의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 활동 평가

-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검사기준 이해 및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 향상·수준 유지를 위한 기관 자체적 활동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를 평가

※ 자체적 활동은 기관 내부적인 기술토론회, 자체교육 등 검사업무 수행과 관련한 검사원 자질향상을 위한 정기적·비정기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며, 직원의 수준 평가를 위한 절차 및 평가결과 미비점 보완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검사책임자를 제외한 검사업무 수행 직원의 70% 이상의 인원에 대해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를 인정하며, 70% 미만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단계 하향하여 평가한다.

※ 자체교육에 대하여는 A.2.2.1 평가항목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계획 수립 → 실행 → 직원 수준평가 → 미비점 보완” 등 기관 자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전산자료를 포함하여 문서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검사직원의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 활동 평가 방법

- 검사기준 이해 및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 활동 및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30”
- 검사기준 이해 및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계획에 따른 시행 및 평가가 일부 누락된 경우 “20”
- 검사기준 이해 및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자체적 활동 및 평가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0”
- 검사기준 이해 및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과 직원 수준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경우 “0”

평가항목A.2.4	평가기준 (배점 : 60)	평가결과
검사직원의 장비 활용수준 향상 활동	장비 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 활동 및 평가가 이루어짐	□ 60
	장비 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계획에 따른 시행 및 평가가 일부 누락됨	□ 40
	장비 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자체적 활동 및 평가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짐	□ 20
	장비 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과 직원 수준에 대한 평가가 없음	□ 0
주요 착안사항		

○ 검사직원의 장비 활용수준 향상 활동 평가

-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검사장비 작동방법 및 활용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를 평가

※ 자체적 활동은 기관 내부적인 기술토론회, 자체교육 등 검사업무 수행과 관련한 검사원 자질향상을 위한 정기적·비정기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며, 직원의 수준평가를 위한 절차 및 평가결과 미비점 보완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검사책임자를 제외한 검사업무 수행 직원의 70% 이상의 인원에 대해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를 인정하며, 70% 미만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단계 하향하여 평가한다.

※ 자체교육에 대하여는 A.2.2.1 평가항목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계획 수립 → 실행 → 직원 수준평가 → 미비점 보완” 등 기관 자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전산자료를 포함하여 문서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검사직원의 장비 활용수준 향상 활동 평가 방법

- 장비 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 활동 및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60”
- 장비 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계획에 따른 시행 및 평가가 일부 누락된 경우 “40”
- 장비 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자체적 활동 및 평가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20”
- 장비 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과 직원 수준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경우 “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기준)

평가항목A.3.1	평가기준 (배점 : 50)	평가결과
검사장비 유지·관리 적정성	보유장비에 대한 장비이력카드를 작성·유지하고 있고,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이 있으며 자체 지침에 따라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실시되고 있음	□ 50
	보유장비에 대한 장비이력카드를 작성·유지하고 있고,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이 있으나 자체 지침에 따른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일부 누락됨	□ 40
	보유장비에 대한 장비이력카드를 작성·유지하고 있고,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은 없으나, 장비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실시되고 있음	□ 30
	보유장비에 대한 장비이력카드 일부가 누락되어 있고,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이 있으나 자체 지침에 따른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일부 누락됨	□ 20
	보유장비에 대한 장비이력카드가 미작성 되어 있고,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은 없으나, 장비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실시되고 있음	□ 10
	보유장비에 대한 장비이력카드가 미작성 되어 있고,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이 없으며, 장비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실시되고 있지 않음	□ 0
주요 착안사항		

○ **검사장비 유지・관리 적정성 평가**

-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장비이력카드 작성・유지여부, 자체적 유지관리 지침(자체기준 등) 수립여부 및 장비 유지·관리 상태 적정성 여부를 확인

※ 장비이력카드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검사장비 이력카드'가 작성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검사장비 및 관리)

① 규칙 제7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검사장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품을 2종 이상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종별 보유 검사장비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검사장비는 1대만 보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장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장비의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장비의 점검.수리 등의 현황을 기록할 것
2. 검사장비는 교정주기와 방법을 설정하고 관리할 것
3. 검사장비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4. 검사원은 검사장비의 조작.사용 방법을 숙지할 것

※ 장비의 유지・관리는 보유장비가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고장 또는 장애 등의 상태가 없도록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되, 주요 검사대상품을 고려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 3종에 대해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 장비운용과 관련한 자체 지침상 검교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장비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되, 검교정 실적은 주기 만료일 이전에 공인기관에 검교정 의뢰를 완료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검사장비의 유지·관리 적정성 평가 방법**

- 장비이력카드는 기관에서 보유한 장비 전체에 대해 작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장비의 유지・관리는 평가반이 확인한 장비 3종 모두가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상위 점수를 부여하고, 적정하게 작동되지 않는 장비가 있는 경우 1단계 하향 평가한다.
- 장비의 검·교정 주기설정의 적정성 및 누락여부를 확인하되, 평가기간 또는 자체 장비관리 지침 주기에 따라 적정 시기에 검・교정 여부를 평가

※ 장비의 검・교정 주기는「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499호(2015.10.30)」 "KOLAS-G-013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 자체적으로 검・교정 주기를 설정한 경우는 그 근거를 확인한다.

○ **검사장비의 유지・관리 적정성 평가기준**

- 보유장비에 대한 장비이력카드를 작성・유지하고 있고,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이 있으며 자체 지침에 따라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 "50"
- 보유장비에 대한 장비이력카드를 작성・유지하고 있고,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이 있으나 자체 지침에 따른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일부 누락된 경우 "40"
- 보유장비에 대한 장비이력카드를 작성・유지하고 있고,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은 없으나, 장비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 "30"
- 보유장비에 대한 장비이력카드 일부가 누락되어 있고,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이 있으나 자체 지침에 따른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일부 누락된 경우 "20"
- 보유장비에 대한 장비이력카드가 미작성 되어 있고,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은 없으나, 장비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 "10"
- 보유장비에 대한 장비이력카드가 미작성 되어 있고,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이 없으며, 장비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실시되고 있지 않음 "0"

평가항목A.3.2	평가기준 (배점 : 50)	평가결과
법정장비 및 추가장비 활용 실적	안전검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가 누락없이기입되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50
	안전검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가 누락없이기입되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40
	안전검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의 일부 누락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30
	안전검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의 일부 누락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20
	안전검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가 전부 누락되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10
	안전검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가 전부 누락되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0
주요 착안사항		

○ 법정장비 및 추가장비 활용 실적 평가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 수행시 기준에 적합한 장비(법정장비 및 추가장비)의 활용여부 평가

※ 법정장비 활용실적 확인은 해당 평가기간 중 임의로 선정한 10개의 검사결과서를 통해 확인하되, 현장방문 평가시 확인하는 검사대상 설비의 검사결과서가 최소한 2개 이상 포함되게 하여야 한다.

※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 확인은 검사결과서를 포함, 안전검사 대상장비 기술지원 또는 기타 안전분야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 결과 등에 해당 장비의 활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0)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법정장비 및 추가장비의 활용 실적 평가방법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가 누락없이 기입되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50"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가 누락없이 기입되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40"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의 일부 누락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30"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의 일부 누락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20"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가 전부 누락되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10"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가 전부 누락되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0"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평가항목A.4.1	평가기준 (배점 : +10)	평가결과
포상실적	최근 2년이내 지정검사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 (대통령 : 5, 장관 : 4,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3, 지방자치단체(장) : 2)	(+10)
주요 착안사항		

○ **최근 2년이내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 대통령 포상 건별 5점, 장관 포상 4점, 공단 이사장 포상 3점, 지방자치단체(장) 2점 등을 부여하여 최대 10점까지 가점 부여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등과 관련한 포상에 한정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분야 포상실적을 전부 인정할 수 있다.

평가항목A.4.2	평가기준 (배점 : -15 ~ -80)	평가결과
행정처분	최근 2년이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처분개월수별 -15점 감점, 최대 -80점 감점)	-15~-80
주요 착안사항		

○ **최근 2년이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처리**

- 업무정지 처분 개월수당 15점 감점하여 최대 80점까지 감점 처리

A.5 종합화

평가항목A.5.1	평가기준 (배점 : +10)	평가결과
종합화	타 지정검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관 상호간 교차 검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 경우	+10
주요 착안사항		

○ **지정검사기관의 종합화 내용에 대한 가점** 부여

- 지정검사기관이 타 지정검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관 상호간 교차 검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을 경우 가점 “10점” 부여

※ 교차검사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주기별로 대상품에 대한 검사를 지정검사기관이 번갈아 실시하여 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검사

B 업무성과

B.1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

평가항목B.1.1	평가기준 (배점 : 50)	평가결과
자율검사프로그램 사업장 검사수행계획 (검사주기 등)	검사를 수행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검사일정 등 검사수행 연간계획 수립	□ 50
	검사 수행 사업장에 대한 검사수행계획을 일부 수립	□ 25
	검사 수행 사업장에 대한 검사수행계획 미수립	□ 0
주요 착안사항		

○ **자율검사프로그램 사업장 검사수행계획(검사주기 등) 평가는**

- 검사수행계획 수립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제1항 제3호의 검사주기를 준수하여 모든 위탁수행 사업장에 대한 검사수행 연간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

※ 다만, 평가기간 중 연간계획 수립시기 이후 위탁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 사업장의 검사수행 계획은 제외한다.

○ **자율검사프로그램 사업장 검사수행계획(검사주기 등) 평가 방법은**

- 검사를 수행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검사일정 등 검사수행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경우 **“50”**
- 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검사수행계획을 일부만 수립하였을 경우 **“25”**
- 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검사수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0”**

평가항목B.1.2	평가기준 (배점 : 50)	평가결과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결과 기록서류 관리	검사서류는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고, 보존기한에 따라 2년간 보존	□ 50
	검사서류는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있으나, 검사서류 누락 10건 이하이고, 보존년한에 따라 2년간 보존	□ 40
	검사서류 보존이 체계적이지 않고, 검사서류 누락 10건 초과이며, 보존년한에 따라 2년간 보존	□ 30
	검사서류 보존이 체계적이지 않고, 검사서류 누락 10건 이하이며, 보존년한에 따라 2년간 보존	□ 20
	검사서류 보존이 체계적이지 않고, 검사서류 누락 10건 초과이며, 보존년한에 따라 2년간 보존	□ 10
	검사서류 문서철 미실시 또는 2년간 보존 미실시	□ 0
주요 착안사항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결과 기록서류 관리 평가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서류에 대한 분류, 보존상태에 대하여 평가

※ 검사서류는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포함하며, 해당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한 사업장의 검사대상품 수를 기준으로 상위 3개사의 검사서류를 확인하되, 검사대상품 수와 검사 결과서 개수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검사서류는 자체기준에 따라 단위별 문서철의 형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문서철에는 철 제목, 문서철 내 색인 등이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폴더정리 등의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 자율검사프로그렘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결과 기록서류 관리 평가방법은

- 검사서류는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고, 보존기한에 따라 2년간 보존 실시 “50”
- 검사서류는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있으나, 검사서류 누락 10건 이하이고, 보존년한에 따라 2년간 보존 “40”
- 검사서류 보존이 체계적이지 않고, 검사서류 누락 10건 초과이며, 보존년한에 따라 2년간 보존 “30”
- 검사서류 보존이 체계적이지 않고, 검사서류 누락 10건 이하이며, 보존년한에 따라 2년간 보존 “20”
- 검사서류 보존이 체계적이지 않고, 검사서류 누락 10건 초과이며, 보존년한에 따라 2년간 보존 “10”
- 검사서류 문서철 미실시 또는 2년간 보존 미실시 “0”

평가항목B.1.3	평가기준 (배점 : 150)	평가결과
자율검사 관련 업무처리 규정(지침 등) 준수여부	법령, 규정, 지침 누락없이 준수	□ 150
	법령, 규정, 지침 미준수 3건 이하	□ 100
	법령, 규정, 지침 미준수 6건 이하	□ 50
	법령, 규정, 지침 미준수 6건 초과	□ 0
주요 착안사항		

○ 자율검사프로그램 관련 업무처리 규정(지침 등)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 자율검사프로그램 업무와 관련된 법령, 고용노동부 등에서 시달된 규정, 지침의 준수상태를 평가
- 주요 평가 착안사항
  - 검사기준 부적합 사항 발생시 처리절차 준수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제2항 또는 기관 자체 매뉴얼, 지침 등)
    * 시행규칙, 자체 매뉴얼 및 지침 각 항목별 미준수 건수를 각 1건으로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제76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검사기관은 기계•기구별 검사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 검사업무의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검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호구* 등 지급 및 관리 여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관련)
    * 지급확인 대상 보호구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규정, 지침의 준수상태 평가 방법은

- 자율검사프로그램 관련 법령, 규정, 지침을 누락없이 준수하여 업무 처리 “150”
- 자율검사프로그램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미준수 3건 이하 “100”
- 자율검사프로그램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미준수 6건 이하 “50”
- 자율검사프로그램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미준수 6건 초과 “0”

평가항목B.1.4	평가기준 (배점 : 150)	평가결과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 실시의 적정성	기준준수, 검사항목 누락 없으며, 검사결과서와 일치	□ 150
	기준준수, 검사항목 누락 또는 결과서와 불일치 3건 이하	□ 100
	기준준수, 검사항목 누락 또는 결과서와 불일치 6건 이하	□ 50
	기준 미준수하거나 검사항목 누락 또는 결과서와 불일치 6건 초과하거나 재해발생 위험성이 있는 중요항목 누락	□ 0
주요 착안사항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 실시의 적정성 평가

- 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실시 대상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준수여부, 검사결과서와 일치여부, 검사항목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실시(최소 2개소)

※ 해당 기관에서 건설현장에 대해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건설현장 1개소가 필히 포함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이 안전검사를 실시한 모든 건설현장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실시 대상품이 설치된 현장확인 결과

- 검사주기 및 검사결과 판정기준 준수하고, 검사항목 누락이 없으며, 검사결과서와 현장 대상품이 일치 “150”
- 검사주기 및 검사결과 판정기준 준수하고, 검사항목 누락 또는 검사결과서와 현장 대상품 불일치 3건 이하 “100”
- 검사주기 및 검사결과 판정기준 준수하고, 검사항목 누락 또는 검사결과서와 현장 대상품 불일치 6건 이하 “50”
- 검사주기 및 검사결과 판정기준 미준수 하거나 검사항목 누락 또는 검사결과서와 현장 대상품 불일치 6건 초과하거나 재해발생 위험성이 있는 중요항목 누락 “0”

B.2 만족도 및 우수사례

평가항목B.2.1	평가기준 (배점 : 100)	평가결과
자율검사 사업장 만족도	자율검사 사업장 만족도 평균 95점 이상	100
	자율검사 사업장 만족도 평균 90점 이상	75
	자율검사 사업장 만족도 평균 85점 이상	50
	자율검사 사업장 만족도 평균 80점 이상	25
	자율검사 사업장 만족도 평균 80점 미만 또는 만족도 조사 미실시	0
주요 착안사항		

○ 별도 시행방안 추진

평가항목B.2.2	평가기준 (배점 : 100)	평가결과
자율검사 우수사례 (정성평가)	우수사례 내용의 적정성	(100)
	타 지정검사기관에 적용 가능성 여부	
	제도로서 발전시킬 가능성 여부	
주요 착안사항		

○ **자율검사 우수사례 평가**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우수하게 추진한 사례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 우수사례 예시 : 검사대상 설비 위험요인 개선, 검사수행 및 추가장비 활용 등 검사방법 개선,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안전검사 활성화 등

○ **우수사례에 대하여**

- 내용의 적정성, 타 지정검사기관 적용 가능성 및 제도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여 최대 “100” 부여

※ 기관 자체적으로 우수사례를 작성하여, 평가시 평가반에 제출하고, 각 기관 평가 종료 후 평가반 회의시 별도 마련된 심사표에 따른 평가를 통해 각 기관별 평가점수 확정

B.3 자율검사 결과 신뢰도

평가항목B.3.1	평가기준 (배점 : 0 ~ -50)	평가결과
자율검사 수행 사업장의 검사대상품에 의한 재해자수	자율검사 수행 사업장의 검사대상품에 의한 재해자수 ('안전검사 대상품' 기인 재해자 1명 증가시 마다 -5점)	0~-50
주요 착안사항		

○ 자율검사 수행 사업장의 검사대상품에 의한 재해자수

- 평가기간 중 자율검사를 수행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기인물 상세'※1가 안전검사 대상품인 재해의 재해자수를 산정하고※2 전년 동기에 발생한 재해자수와 비교, 동일하거나 감소한 경우 0점 감점,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재해자수 1명당 5점씩 감점하여 10명 이상 증가한 경우 최대 50점 감점

※1 산업재해 통계상 재해내용 등은 관계없이 '기인물 상세'가 안전검사 대상인 것으로 한다.

※2 평가당시 가장 최근의 산업재해 공식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 산업재해 통계상 안전검사 대상품 기인물 상세 >

안전검사 대상품	기인물 상세
프레스	상세정보 부족한 프레스 및 전단기
	확동클러치프레스
	마찰클러치프레스
	액압프레스
	기타 프레스 및 전단기
전단기	전단기
크레인	천장크레인
	타워크레인
	이동식크레인
	지브크레인
	겐트리크레인
	호이스트
리프트	상세정보 부족한 승강기
	화물용승강기
	기타승강기
	건설용리프트
압력용기	저장탱크, 용기
	반응기
	열교환기류
곤돌라	곤도라
원심기	탈수기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롤러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사출기

※ 국소배기장치 분야로 지정받은 기관은 안전검사 실시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의한 재해를 대상으로 함. 단, 산업재해 통계상 국소배기장치는 기인물 상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안전검사 실시사업장의 재해개요를 기준으로 국소배기장치에 기인한 재해를 별도 확인하여 재해자 증감을 확인한다.

평가항목B.3.2	평가기준 (배점 : 0 ~ +50)	평가결과
검사대상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장-기관간 교류활동	사업장-기관간 교류활동에 따라 최대 50점 가점	0~+50
주요 착안사항		

○ 검사대상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장-기관간 교류활동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장과 지정검사기관간 교류활동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 교류활동은 문서 또는 전산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만 인정할 수 있음

- 인정 가능 교류활동
  - 안전검사 대상 설비 관련 사업장 관계자 안전교육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 및 기술자료 보급
  - 안전검사 위탁사업장-기관간 간담회 등 교류

인정가능 교류활동	평가산식	비 고
안전검사 대상 설비 관련 사업장 관계자 안전교육	개사 × 회 × 1점 = 점	최고 20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 및 기술자료 보급	개사 × 종 × 1점 = 점	최고 15점
안전검사 위탁사업장 - 기관간 간담회 등	개사 × 회 × 3점 = 점	최고 15점